



2021 개인정보보호의 의미와 법 주요 개정사항



개인정보 보호의 의미



개인정보의 종류

 가명처리를 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

가명정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자연인에 관한 정보만 해당
- 국적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법 적용대상 (Ex. 외국인, 피의자 정보)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

'개인에 관한' 정보여야 함

-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 없음
- 단, 연관성에 따라 개인정보가
 될 수 있음
 (Ex. 대표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해당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활용 될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고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여야 함

'정보의 내용 ·형태' 등은 제한이 없음

- 전자, 수기 등 형태와 처리방식은 무관
- 주관적 평가, 허위정보라도 해당될 수 있음 (Ex. 평가표, 예명)

개인정보의 종류

■ 통화·문자내역, IP주소

■ 화상정보, 위치 정보

통신·위치 정보 정신적 정보

- 기호, 성향
- 신념, 사상

- ▼ 주민등록번호
- 이름, 주소, 가족관계 등

일반적 정보



개인정보

재산적 정보

- 개인금융정보
- 신용정보

■ 교육 정보

■ 근로 정보, 자격 정보

사회적 정보 신체적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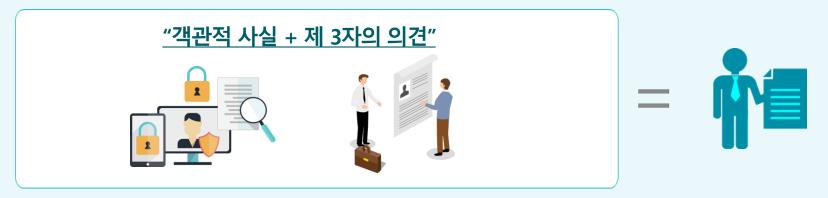
- 신체정보
- 의료·건강정보



개인정보의 종류

○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정보, 이미 공개된 정보도 개인정보일까?

▲ 정보의 내용 · 형태 등은 특별한 제한이 없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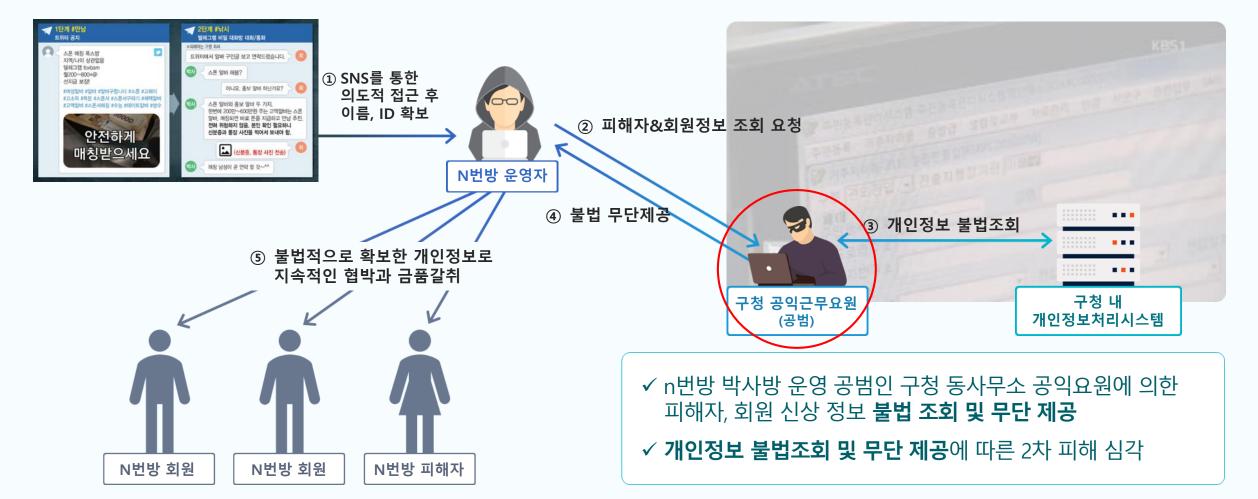


객관적 사실에 관한 정보나 주관적 평가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 (대법원 2016.03.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 (공공기관)

➡ 📵 공공기관 내부 직원에 의한 오남용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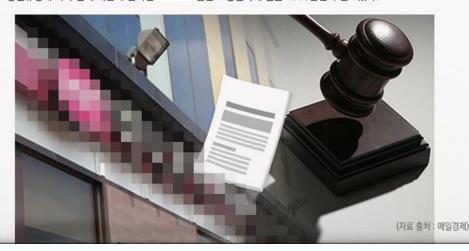
➡ <mark>⑥</mark>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법인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개인정보 49만여 건 유출... 본부장 벌금형

최고고객책임자인 ㅠㅠㅠ 관리지원본부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17년 고객과 임직원 개인정보 49만여 건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사전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다.

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김 본부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도 동일하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2017년 고객정보 유출 사고 → 과징금 처분 → 검찰 불구속 기소 → 재판 → 1심 결과

- ✓ 여권번호와 예약 내역이 포함된 고객정보 유출
- ✓ 관리자가 별도의 인증 수단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고객정보가 담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음
- ✓ 검찰증거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00여행사)의 유죄 인정 및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나 유출경위 등을 고려해 형량 결정
- ✓ (벌금형) 00여행사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 모 본부장에게 각각 1천만원 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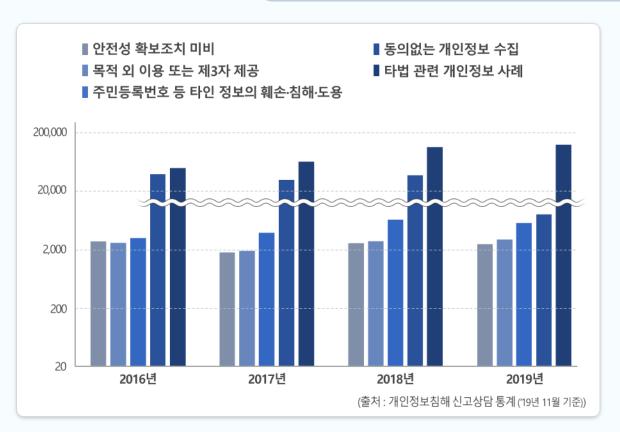
c.f. 2017년 9월 고객정보 유출 후 2018년 2월 과징금 3억원 2,725만원, 과태료 1,800만원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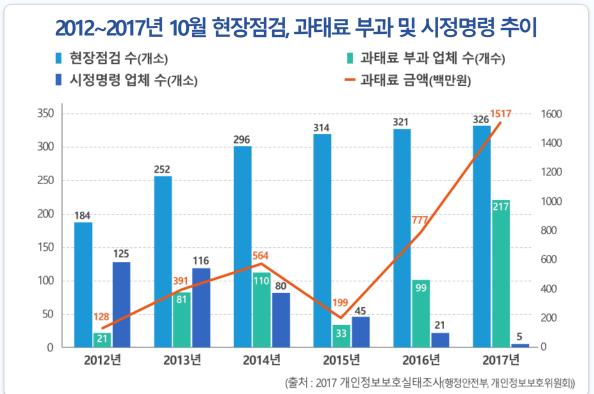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 (기업)



▽▽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상담 현황과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추이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개정 사항





개인정보 개념의 명확화

- ◆ 개인정보 판단기준 보완 :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 구체화
- ◆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 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명확화 ※ 역명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

기 존

제2조(정의) 1호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 라 한다)
 -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명정보의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 가명정보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

▶ 가명처리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제2조)

▶ 가명정보의 처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제28조의 2 (가명정보의 처리 등))

SEEDGEN 27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식별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 개인(원본)정보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직장전화	자택전화	주소	직업	가족	예금 평균잔액	대출액
홍길남	67년1월3일	010-9999-3333	055-747-0088	055-2345-6789	경남 창원시 마산구 합포동 123	국회의원	배우자, 아들1	4,567,900원	45,896,789원

▶ (잘못된)가명정보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직장전화	자택전화	주소	직업	가족	예금 평균잔액	대출액
- *삭제	- *삭제	Ddkslslf93 *암호화	- *삭제	- *삭제	경남 창원시 마산 *범주화	국회의원	배우자, 아들1	4,567,900원	45,896,789원

^{※ &#}x27;경남 창원시 마산에 주소를 둔 국회의원'이라는 극소수사람에 관한 개인정보로 식별 가능

▶ (제대로 된)가명정보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직장전화	자택전화	주소	직업	가족	예금 평균잔액	대출액
- *삭제	- *삭제	Ddkslslf93 *암호화	- *삭제	- *삭제	경남 창원시 마산 *범주화	- *삭제	배우자, 아들1	4,567,900원	45,896,789원

[※] 사실 상 해당 정보만으로는 식별 불가능, 다만 핸드폰번호 암호화 알고리즘을 알면 복원 가능하므로 가명정보에 해당

▶ 익명정보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직장전화	자택전화	주소	직업	가족	예금 평균잔액	대출액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경남 창원시 마산 *범주화	- *삭제	가족 2명	400~5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음

SEEDGEN



데이터의 이용 제공 범위 확대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범위 확대

제15조, 제17조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범위 내** 이용·제공 가능



제15조 3항, 제17조 4항

개인정보의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 이용·제공 가능

◆ 고려사항

수집목적 당초 수집 목적과의 합리적 관련 범위 정보주체 정보주체의 불이익 발생 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가명정보의 이용·제공 범위 확대

제18조 2항 4호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



제28조의2 1항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 ◆ 가명정보 이용·제공 범위
 - <u>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u>
 - 新기술·제품·서비스 개발 등 <u>산업적 목적</u>을 포함하는 <u>과학적 연구</u>, 시장조사와 <u>상업 목적</u>의 통계 작성도 <u>포함</u>

SEEDGEN 29

가명정보의 안전조치 요구사항

- ◆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 및 형사벌 부과
- ◆ 재식별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징금 및 형사벌 부과

가명정보 안전조치 의무 (제28조의4)

- 원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를 별도로 분리·보관** 관리
-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 가명정보 처리 기록을 작성·보관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명정보 처리시 금지 의무 (제28조의5)

-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 정보 처리 불가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처리 중지, 회수·파기

(위반시)

4억원 이하 또는 전체매출 3% 이하 과징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i)

가명정보의 안전조치 요구사항

- ◆ 추가정보를 **별도로 분리**·보관 관리
- ◆ 가명정보 **처리 기록**의 작성·보관

추가정보를 별도로 분리·보관 관리 (영 제29조의5제1항)

-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보관**
-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의 분리**



가명정보 처리 기록의 작성·보관 (영 제29조의5제2항)

- ▶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
-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 ▶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감사합니다

